#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 국세청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사회복지, 장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 2.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령 §35에 따른 거래 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법법 \$24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 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법 \$24②(1)에 따른 기부금, 법법\$24③(1)에 따른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외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 니다.

#### □ 기부금 구분

- 법법 §24②(1)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법법 §24③(1)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그 밖의 기부금 : 위 이외에 지출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제외)

## 3.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은 법법 § 24②(1)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2)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각각의 요건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법 § 24②(1)에 따른 공익법인(법법 § 24②(1), 법인령 § 38) 법법 § 24②(1)에 열거된 기부금을 받아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 (예시)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수령하는 아래 각 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급목적 설립)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 구 법법 \$24②(7)(구 법인칙 별표6의7)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18. 1. 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받아야 하는 단체로 변경됨(단, '18. 1. 1.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봄)
- 나. 법인령 §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법인령 § 39) 법인령 § 39①(1)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 구 법인령 \$36 ① (1년) 및 (하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보호 등 단체'와 (하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구 법인칙 별표 6의2)'는 '18. 1. 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받아야 하는 단체로 변경됨(단, '18. 2. 13.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 12. 31. 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 다. 법인령 § 39①(2)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
- 법인령 §39 ①(2) 다목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법인령§38⑥,·§39①(1)(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관 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회재정부장과이	지저하는	곳인번이	듰	1

구 분	추천기관	관련 법령	기부금단체 유형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주무관청	법법 § 2 4 ②(1)(라) 9 ) , (바) 법인령 §38 ③ ④	(구) 법정 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인령 §39①(1)(바)	(구) 지정 기부금단체

<sup>\* &#</sup>x27;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법인령 §38③④)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 등을 말합니다.

- □ 한국학교(법법 §24② (1) 례9), 법인령 §38③)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 □ 전문모금기관(법법 §24② (1) (빠. 법인령 §38④)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 1) 지정절차

법인령 §38③④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학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 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합 니다.

## 2) 지정기간

<sup>※</sup> 지정·고시 공익법인 확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법법 § 24②(1)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법인령 § 39 ①(1)钟)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 (관할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을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한편, 아래의 단체는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 2018. 2. 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 2. 2018. 2. 13. 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3. 2018. 1. 1. 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21. 1. 1. 이후 지정분 분부터 적용
-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 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 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 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 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 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 을 것\*
  - \* (단서 요건)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 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법인령 §39⑫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법 ⑨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다만, 법인령§39⑤(1)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지정절차

- ①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관할세무 서 포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합니다.
  - \* '21. 1. 1.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 ②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 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 분기말 지정·고시합니다.

 
 비영리법인 등
 신청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고시)

#### | 분기별 신청기간 |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 · 고시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 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 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 10	11/10	12/31

#### 2) 구비서류

-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인칙 별지 63-5 서식)
-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③ 정관 (지정요건 1)~3) 내용 반드시 포함)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 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칙 별지 63-6 서식)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 신규 신청시 : ①~⑥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 3) 신청방법
- 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② (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법 \$24③(1)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가. 공익법인 유형별 의무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인령 § 38⑧).

-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칙 별지 제63의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VII. 부록-8번' 참고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 '21. 2. 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2) 법인령 §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 39①(1)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아래 ④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인령 § 39⑤).

- \* 법인령 §39 ①(1)(가)~(라)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등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① 법인령 § 39①(1)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령 § 39①(1)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 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21. 1. 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 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에 따라 공개할 것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sup>13</sup> VII. 부록-8번' 참고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 '21. 2. 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 업에 지출할 것
  -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의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상증령 § 12(2)(학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
    - ☞ ⑥, ⑦, ⑧ 의무사항은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법법 §112의2)

상기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 외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칙 제75의3 서식)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I. 부록-11번' 참고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6.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받아 점검하여 국세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기획재 정부장관은 공익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령 § 39①(1) 가목~라목의 공익법인이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보고(법인령 **§** 39 **⑥· §** 38 **⑨**)

- ① (보고대상) 법인령 § 38③④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과 법인령§ 39①(1)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단체는 제외)
- ② (보고기한)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주무관청)\*에 의무이 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법인칙 § 19①).
  - \*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가~(라). (바)은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
  - \* 법정기부금단체(법법 \$24③, 법인령 \$38)은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게 보고
- ③ (보고서식) 법인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법인령 § 39 ①(1)에 따른 공익법인), 제63호의11 서식(전문모금기관), 제63호의12 서식(한국학교)
- ④ (보고요구)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보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합니다(법인칙 § 19②).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국세청장이 법인령 \$39①(1)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법인에 요구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주무관청의 점검결과 통보(법인칙 §19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주무관청의 점검서식에 기재하여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법인령 § 38⑪⑬⑭·§ 39⑧⑨⑬)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 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 가산세 포함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②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제외\*)을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1. 1. 1.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해산한 경우

또한,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상기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익법인 등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국기법 §85의5, 국기령 §66⑩)

1) 개요

국세청장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이내 에 상증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 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 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 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4.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 4호는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3) 공개 방법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4) 공개 절차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 ② 통지일부터 6개월(소명기간)이 지난 후.
- ③ 해당 단체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에 서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
- ④ 공개대상자 최종 선정

### 7.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서 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설립허가 등 통보(상증법 § 48⑦, 상증령 § 41③)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통보사항) ⑦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사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공익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
  - ☞ 설립허가 시점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공익단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 익법인에 해당함
  - \* (통보서식) 공익법인설립허가 등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①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 ② (통보기한)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증여세 등 부과내용 통보(상증법 § 486, 상증령 § 412)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통보사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내용
  - \* (통보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② (통보기한)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법인령 § 39①(1)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통보(법인령§ 39 ®)

- ① (국세청→주무관청)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법인령 § 39①(1)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법인령 § 39①(1)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인령 § 39⑧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에 통지해야 합니다.
  - \* (적용시기) '21. 1. 1. 이후 공익법인 등이 법인령 \$3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부터 적용

